

학술연구비 관리규정

제정일 : 1989.06.14

개정일 : 2007.08.04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교수들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(이하 “본 연구비”라 한다)의 배정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연구비 지원과제) ①본 연구비의 지원과제는 단행본으로 출판될 학술저서(200 자 원고지 1,000 매 이상)와 연구논문 그리고 예술발표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②본 연구비의 지원과제는 단행본으로 출판될 학술저서 (200 자 원고지 1,000 매 이상)와 연구논문 그리고 예술발표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3 조(연구기간) 본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기간은 논문과 예술연구의 경우 1년, 저술의 경우 2년으로 한다.

제 4 조(연구비 신청자격) ①연구비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서,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(저서포함)의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.

②현재 진행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본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연구비에 의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과거에 본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나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교원은 본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.

③타 대학교 또는 외부 연구기관 소속원은 본 대학교 총장의 특별 추천을 받아 본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 5 조(연구비 신청 절차) ①본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대학 연구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원은 위 신청서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대학교 연구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②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원은 전항의 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 소속대학 연구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연구과제의 선정) ①각 대학 연구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연구비 지원신청 과제를 자체 평가하여, 이를 연구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.

②연구진흥위원회는 각 대학 연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연구과제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원의 연구과제, 본 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정책연구과제를 최종 심사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8. 4.]

제 7 조(대학연구관리위원회) ①각 대학연구관리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부설 연구소 소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교수로 구성한다.

②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
③의과대학은 기존의 의과대학 연구관리위원회가 이 일을 관장한다.

제 8 조(대학교 연구관리위원회) ①<삭제 2007. 8. 4.>

②연구과제의 최종 선정과 연구비지급, 연구결과의 평가 등 연구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연구진흥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07. 8. 4.>

③<삭제 2007. 8. 4.>

④<삭제 2007. 8. 4.>

제 9 조(연구결과) ①<삭제>

②<삭제>

③연구책임자는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한 국내외에서 공인된 학술지를, 저술의 경우 출판된 단행본을 각각 연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연구기간 만료후 2 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내역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연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⑤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보고서의 국, 영문 요약문(저술의 경우 200 자 원고지 30 매 내외, 논문의 경우 원고지 5 매 내외)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⑥연구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구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0 조(연구결과의 평가) 논문의 경우 국내·외 학술지에 게재, 저술의 경우 출판함으로써 평가에 대신한다.

제 11 조(연구결과의 출판)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성과물에는 “이 저서(논문, 예술연구)는 00 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” 이라고 명기한다.

제 12 조(연구비의 지급·관리) ①<삭제>

②연구비에 관한 업무는 연구처가 관장한다.

제 13 조(위임규정)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진흥위원회가 정한다.<개정 2007. 8. 4.>

부 칙

(1) 이 규정은 1989 년 6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.

(2) 이 개정 규정(제 4 조 나항, 제 5 조 가항, 제 9 조)은 1990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
(3) 이 개정 규정(제 2 조 제 1 항, 제 3 조, 제 4 조 제 3 항, 제 6 조 제 2 항, 제 8 조 제 1 항, 제 9 조 제 1 항, 제 3 항, 제 4 항, 제 6 항, 제 11 조 제 1 항, 제 12 조 제 1 항, 제 2 항)은 1991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12 조 1 항은 1991 년도 학술연구비부터 적용한다.

(4) 이 개정 규정(제 4 조 제 1 항, 제 5 조, 제 6 조, 제 9 조 제 1 항)은 199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(5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 3 조, 제 8 조 제 1 항, 제 9 조 제 1 항, 제 3 항 제 6 항, 10 조, 제 11 조)은 199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(6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 (제 2 조 제 2 항, 제 3 조, 제 4 조 제 1 항, 제 5 조, 제 6 조 제 1 항, 동 제 2 항 삭제, 동 제 3 항을 제 2 항으로, 제 8 조 제 1 항, 제 11 조)은 1995 년 4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
(7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 8 조 제 1 항, 제 12 조)은 1996 년 7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(8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 5 조, 제 6 조, 제 8 조, 제 9 조, 제 12 조)은 199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(9) 이 개정 규정(제 5 조 제 1 항, 제 6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, 제 8 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, 제 13 조)은 2007 년 8 월 5 일부터 시행한다.